

## 8.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 법률

법률 제6,245호 2000. 1. 28

###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국토이용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6항 및 동법 제30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건설 · 정비 · 개량등”을 “개발 · 정비 · 관리 · 보전 등”으로 한다. 제14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중 “도시계획법 및

제13조의3제1항 중 “용도지역안에서 하여야 토지구획정리사업법”을 “도시계획법 및 도시

하며,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지 개발법”으로 한다.

정은 도시지역안에서”를 “용도지역안에서”로

부 칙

하고, 동조제3항 중 “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호 및 동법 제12조제4항”을 “도시계획법

주택회보